

환경부고시 제2022 - 21 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「하수도설계기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2년 1월 20일

환 경 부 장 관

###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

하수도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2018년 1월 1일”을 “2022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